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 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①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하고 2종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별표1 "특정부위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⑦ 제2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계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특정부위 분류표

분류번호	특정부위의 명칭	분류번호	특정부위의 명칭
1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20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2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21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3	직장 또는 항문	22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4	간장, 담낭(쓸개) 또는 담관	23	선골부 또는 미골부(해당신경 포함)
5	췌장	24	좌견관절부
6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25	우견관절부
7	코(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26	좌고관절부
8	인두 또는 후두	27	우고관절부
9	입,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귀밑샘) 또는 설하선	28	좌상지(좌견관절부 제외)
		29	우상지(우견관절부 제외)
10	귀(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또는 유양돌기 포함)	30	좌하지(좌고관절부 제외)
		31	우하지(우고관절부 제외)
11	안구 또는 안구부속물(안검, 결막, 누기,안근 또는 안와내 조직 포함)	32	자궁체부(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12	콩팥(신장)	33	서혜류(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13	요관, 방광 또는 요도		
14	전립선	34	식도
15	유방(유선 포함)	35	대장(맹장 및 직장 제외)
16	자궁(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36	피부(두피 및 입술포함)
17	난소 또는 난관	37	수골(手骨)
18	고환(고환초막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38	족골(足骨)
		39	상·하악골(위턱뼈 ·아래턱뼈 上·下顎骨)
19	갑상선(부갑상선 포함)		

(별표2)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심장질환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뇌혈관질환	I60 ~ I69	
당뇨병	E10 ~ E14	
고혈압	I10~I13, I15	
결 핵	A15~A19, B90	
담석증	K 80	담석증
요로결석증	N 20	콩팥(신장) 및 요관의 결석
	N 21	하부 요로의 결석
	N 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임신중독증	O 11	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한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O 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부종 및 단백뇨
	O 13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고혈압
	O 14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임신-유발성] 고혈압
	O 15	자간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M 05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M 06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M 08	연소성 관절염
	M 15	다발관절증
	M 16	고관절증
	M 17	무릎관절증
	M 18	제 1수근중수 관절의 관절증
	M 19	기타 관절증
척주만곡증	M 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 41	척주측만증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